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강 길 훈 *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조사결과 분석 및 논의 |
| II.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의 이론적
고찰 및 실태 | V. 결 론 |
| III. 조사설계 | |

I. 서 론

오늘날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그 기능이 세분화되고 생활이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안전의 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시민들의 생활 안전에 대한 각종 사회 불안 현상은 사회지표인 범죄통계 자료¹⁾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생각하는 안전에 대한 문제는 국가경찰의 업무영역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오늘날 시민들의 의식, 생활, 교육, 문화수준 향상으로 치안문제에 있어서 시민들이 주인으로 경찰에 대한 역할 기대가 크지만 과중한 업무와 예산, 인력, 장비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효율적인 범죄예방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안전의 부재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함께 안전수요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한 민간경비의 필요성과 역할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주로 국가기관에 의존해 오던 시민생활의 안전문제가 사회 발전과 더불어 시민 개개인의 영역으로 인식되면서 사회적 필요에 의해 민간경비업이 하나의 전문직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각종 국가재산 및 사회 간접 자본 시설운영의 민간이양으로 경제적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경비활동에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여 기존 청원 경찰이 말

* 용인대학교 취업복지과장, 행정학 박사.

1) 범죄백서(2002년 12월), pp. 28-36, 법무연수원, 2001이년 총범죄발생건수(1985980) 중 형법범죄(553673), 특별법범죄(1432307)으로 매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고 있는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를 민간경비업체에 아웃소싱(out-sourcing) 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을 개정(2001.3) 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민간경비인 특수경비원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민간경비의 성장에 있어서 양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되나 질적 향상의 바탕이 되는 교육훈련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가 중요시설을 경비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즉,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분야에서 준공공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의 고유한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성에 맞는 전문교육훈련을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특수경비원은 일반 시설 경비와 달리 국가기관산업, 공공시설, 외국공관, 공항이나 항만 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간접적으로는 민간경비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경비원 제도를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특수경비원의 자격과 특수경비업체 요건의 강화가 바람직하지만 무엇보다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현장에서 맡고 있는 특수경비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비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성 함양과 자질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 경비원, 특수경비업체, 전문교육기관·교육훈련의 3요소가 삼위일체를 이루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되어야 하나 그 역할과 중요성에 비해 아직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경비분야의 국가중요시설 수요증가에 따라 인적자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실태를 분석하여 발전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를 통해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여 연구토대를 구축하고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SPSS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II.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의 이론적 고찰 및 실태

1.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의 이론적 고찰

가.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의 의미

교육훈련이란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 목표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²⁾, 교육(Education)과 훈련(Training)의 합성어로서 교육이란 특정직책과는 직접관련 되어있지 않은 각 개인의 일반적인 잠재능력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고, 훈련

2) 안해균, 「현대행정학」 (서울: 다산출판사, 1984), p.452-453.

은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을 포함하여 직무와 관련된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이란 경비원의 일반 능력을 개발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며 태도의 발전적 변화를 촉진시켜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³⁾

그러므로 특수경비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은 일반적인 교양, 지식, 민주적 신념, 가치관 및 태도의 함양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현대에서는 훈련의 성격을 폭넓게 인식하고 용어 또한 교육과 훈련을 병기하여 교육훈련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⁴⁾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은 최초 임용시 실시하는 신입교육 뿐만 아니라 임용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직무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급변하는 사회의 치안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수 있는 기량을 향상하는 데 있다. 또한 직무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개개특수 경비원의 가치관과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의 기본적인 목적은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고 가치관을 정립하여 경비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데 있으며 더 나아가 민간경비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또한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은 훈련 수요의 충족에 의하여 특수경비조직의 통합성을 유지 증진시키며 경비업무의 능률적인 임무수행과 낭비배제 및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조직과 고객에게 필요한 경비근무자가 되기 위하여 새로운 지식, 기술, 기법들을 습득케 하는 교육훈련을 주기적으로 행함으로써 실수가 감소되고 직무수행의 능력향상을 기할 수 있다.

둘째 교육훈련을 통한 사후평가로서 자질이 우수한 경비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직무수행의 능률을 기할 수 있다.

셋째 신규채용자의 경우, 선발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부적격자를 배제할 수 있다.

넷째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교육훈련에 의해 직무습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다섯째 피교육자들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습득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사기가 진작 될 수 있다.

여섯째 특수경비원은 사회의 범죄예방에 커다란 책임을 지고있으며 국가적, 사회적 책무의 수행은 멸사봉공의 충성심을 필요로 한다.

3) 유중해,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1990), p.538.

4) 경찰대학, 「경찰학개론」 (경기: 경찰대학편집부, 1995), p.297.

일급제, 교육훈련은 충성심과 성실성을 고양시키고 오랫동안 경비직무에 종사할 수 있는 경력개발(Career Development)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 중의 하나이다.⁵⁾ 특히 경력개발 측면에 있어서는 특수경비원의 지위를 향상시켜가면서 만족스러운 특수경비 생활을 영위하도록 준비 시키는 것도 교육훈련의 목적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과거에는 교육훈련의 중점을 직무에 관한 능력향상에만 두어왔으나, 오늘날에는 미래를 지향한 능력개발과 발전에까지 그 유용성을 확대시키고 있다.⁶⁾

그리고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은 경비조직의 침체를 방지하고 개혁을 가져오는 수단이 되며 조직의 안전성과 융통성을 확보함으로써 특수경비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나.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활동 영역

특수경비원이 배치되어 근무하는 경비대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⁷⁾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을 말하며 국가중요시설을 아래와 같이 분류 할수 있다.

<표2-1> 국가중요시설의 분류 기준

시 설 급 수	국가기관, 산업시설, 발전시설, 발전소, 방송국, 통신시설, 교통시설, 공항, 항만, 수원지, 과학연구시설, 교도소
가 급	국방, 국가기간산업 등 국가의 안전보장에 고도의 영향을 미치는 행정 산업기간
나 급	국가보안상 국가경제·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정산업기간
다 급	국가보안상 국가경제·사회생활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 및 산업시설
기타 급	중앙부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행정 및 산업시설로서 중요도 희박

자료: 경찰대학, 경찰경비론 1998

가급 국가중요시설에는 기관으로는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원자력발전소, 대규모산업시설, 국제 공항, 항만시설, 나급에는 대검찰청 및 경찰청청사, 일정수준의 발전시설, 국내주요비행장, 그리고 다급에는 중앙행정기관의 廳, 송신시설, 댐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5) John L. Sullivan,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77) , p.238-239.

6) 박연호, 「인사행정론」 (서울 : 법무사, 1982), p.445.

7) 경비업법 시행령 제2조.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배치된 경비구역 안에서 관할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협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하며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애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설주는 그 무기의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무기를 국가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⁸⁾

또한 특수경비원의 의무는 특수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 관할경찰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수경비원은 파업, 태업, 기타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⁹⁾라고 경비업법에 규정하고 있다.

2.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실태

가. 특수경비원 교육훈련 시설 및 강사의 기준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특수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한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특수경비교육을 받게 하고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경비원에게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경찰교육기관이나 또는 단체에서 개설한 특수경비 신입교육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한편 특수경비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특수경비업무를 종료한 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특수경비업자는 소속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6시간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¹⁰⁾.

그리고 특수경비원의 기본 교육시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 감독하여야 하고¹¹⁾ 직무교육시는 관할 경찰서장 및

8) 경비업법 제14조.

9) 경비업법 제15조.

10) 경비업법 시행령 제 19조.

11) 경비업법 제 113조.

공항경찰대장등 국가중요시설 경비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대상시설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¹²⁾

한편 특수경비원 신입교육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경비업법시행규칙 제14조, 특수경비원에 대한 신입 교육실시 등의 조건을 갖추어 경찰청장에게 지정을 요청하면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¹³⁾.

<표2-2> 특수경비원 교육훈련 시설 및 강사의 기준

구 분	기 준
1. 시설기준 가. 강의실 나. 기계경비 실습실 다. 체육관 또는 운동장 라. 사격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165 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 감지장치, 수신장치 및 관제시설을 갖춘 132 제곱미터 이상의 실습실
2. 강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에 의한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목 관련학과의 전임강사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연구실적이 있거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방법, 경비 또는 경호업무를 7년 이상 담당한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 기계경비경비실습실·체육관·운동장 및 사격장이 교육기관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 등을 통하여 교육기간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기준은 10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165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과 감지장치, 수신장치 및 관제시설을 갖춘 기계경비실습실 132 제곱미터 이상의 실습실을 갖추어야 하고 체육관 또는 운동장 및 사격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특수경비원 강사의 기준은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목 관련학과의 전임

12) 경비업법시행규칙 제 16조.
 13) 경비업법시행규칙 제 14조.

강사(전문대학은 조교수)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교육과목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연구실적이 있거나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또는 방법, 경비경호업무를 7년 이상 담당한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강사가 현장경험이 부족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론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강의내용 또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교육훈련의 성과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 실태이다.

나.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의 과목 및 시간

<표2-3>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의 과목 및 시간

구 분	과 목	시 간
정신교육	○ 정신교육	4
학과교육	○ 헌법 및 형사법(인권, 경비관련범죄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4
	○ 경비업법(청원경찰법을 포함한다)	8
	○ 민간경비론	2
실무교육	○ 기계경비실무	4
	○ 경찰관직무집행법(불심검문을 포함한다)	4
	○ 시설경비(야간경비를 포함한다)	6
	○ 소 방	4
	○ 정보보호	2
	○ 보안업무	4
	○ 민방공(화생방을 포함한다)	6
	○ 총기조작	2
	○ 총검술	4
	○ 사 격	12
○ 예 절	2	
무술교육	○ 체포술 및 호신술	8
기 타	○ 입교식·평가·수료식 등	4
계		80

특수경비원이 신입직원으로서 국가 중요시설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배치 전 반드시 신입교육 80시간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특수경비원 수료증을 취득한 사람이야 근무가 가능하다.

또한 특수경비원이 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의 과목과 시간은 다음과 같다.

정신교육은 4시간으로 특수경비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덕목으로¹⁴⁾ 도덕성 및 직업윤리에 관한 투철한 직업의식을 갖추기 위해 필요하며, 학과교육은 경비업무수행시 필요한 각종 법령에 관한 교육 12시간과 민간 경비 산업의 도입과 발전에 대한 민간경비론 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무교육으로는 시스템 경비 이해를 위한 기계 경비실무 4시간, 근무수칙과 상황발생시 조치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4시간, 국가중요시설에서의 근무요령을 위한 시설 경비 6시간, 화재에 대비한 소방교육 4시간, 대·내외적인 정보보호 2시간, 보안 업무 교육 4시간 불순분자의 제압을 위한 총기조작 2시간, 실탄사격술 12시간, 총검술 4시간, 내방객 안내를 위한 예절교육 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술교육은 체력을 단련하여 무도를 바탕으로 초기단계에 거동수상자를 제압할 수 있는 체포 및 호신술 8시간 기타 입교, 평가 졸업에 필요한 4시간 총 8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교육훈련 실시현황 (2001-2002)

<표2-4> 특수경비원 교육훈련 실시현황

○2001년

교육기관	회 차	교육일자	교육인원
인천공항경찰대	제 1차	08. 27 ~ 09. 06	201
“	제 2차	09. 07 ~ 09. 18	210
“	제 3차	09. 19 ~ 09. 29	205
“	제 4차	10. 08 ~ 10. 19	163
“	제 5차	10. 22 ~ 11. 02	209
“	제 6차	11. 05 ~ 11. 16	229
“	제 7차	11. 19 ~ 11. 30	225
“	제 8차	12. 03 ~ 12. 14	251
계	총 8회		1,693 명

14) 경비업법시행령 제 14조.

○2002년

교육기관	회 차	교육일자	교육인원
인천공항경찰대	제 9차	03.04 ~ 03.15	235
“	제 10차	03.25 ~ 04.04	275
“	제 11차	04.15 ~ 04.26	288
경기대 사회교육원	제 1차	04.29 ~ 05.09	79
“	제 2차	06.03 ~ 06.13	132
“	제 3차	11.04 ~ 11.13	188
“	제 4차	11.25 ~ 12.05	117
한체대 사회교육원	제 1차	08.12 ~ 08.21	132
에스원 연수원	제 1차	05.13 ~ 05.20	80
“	제 2차	07.15 ~ 07.22	90
“	제 3차	09.11 ~ 09.18	78
계	총 11회		1,694 명

* 자료제공 : 경찰청 방법기획과 (2003.01.13)

특수경비원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가 중요시설에서 경비업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교육기관이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개설한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근무할 수 있다. 그리고 특수경비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각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훈련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도에는 인천공항 경찰대에서 8회에 걸쳐 1693명을 실시하였고, 2002년도에 인천공항 경찰대 3회(798명), 경기대 사회교육원 4회(516명), 한국체대 사회교육원 4회(132명), 에스원 연수원 3회(248명)으로 총 3387명의 특수경비원을 배출하였다. 그리고 국가중요시설의 증가에 따라 앞으로 특수경비원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사용자가 바라는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II. 조사 설계

1. 연구방법 및 대상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수 경비원 교육훈련 환경, 교육훈련 프로그램, 피교육 훈련자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한국의 민간경비 교육훈련 체제에 관한 연구(강길훈 1999), 한국 민간 경비경호의 교육훈련 발전방안(1999), 경비원의 특성과 교육훈련 성과와의

관계(강길훈, 2000), 경찰교육훈련에 관련된 연구(이상원, 1994)등을 참고하였으며,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는 학계에 보고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이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실태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으므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문화하여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선정은 특수경비원 기본교육을 수료한 교육자를 대상으로 2002년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1개월간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연구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조사의 목적과 설문 내용을 설명하여 설문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전체문항의 구성은 교육훈련 환경, 교육훈련 프로그램, 인구통계학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0문항이다. 교육훈련에 대한 발전방안은 분석한 설문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150부를 배포하였으나 연구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유효 설문지 132부(88%)가 회수되어 통계처리에 이용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를 통해 연구 토대를 구축하고 설문지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설문조사 대상자의 특성

가. 연령분포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고 각종 안전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뛰어난 체력과 기동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특수 경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의 연령은 경비 서비스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젊은 층이 많을수록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1> 연령분포

구 분	빈도수	비율(%)
20세 ~ 29세(20대)	74	56.1
30세 ~ 39세(30대)	35	26.5
40세 ~ 49세(40대)	11	8.3

50세 ~ (50대)	12	9.1
계	132	100.0

<표 3-1>에서 보는바와 같이 30세 미만이 (56.1%)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31~39세가 (26.5%), 41~49세가 (8.3%), 50세 이상이 (9.1%)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원들의 연령분포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동력 유지차원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반면 경험이 부족한 면을 지적할 수 있으나 꾸준한 교육훈련으로 이를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다.

나. 학력분포

우리나라 경비산업의 악순환에서 볼 수 있듯이 특수경비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저학력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표 3-2> 학력분포

구 분	빈도수	비율(%)
중 졸	9	6.8
고 졸	59	44.7
전문대졸	25	18.9
대학중퇴	20	15.2
대학졸업	19	14.4
계	132	100.0

<표 3-2>에서 보는바와 같이 특수경비원의 절반정도가 고졸 이하(51.5%)의 학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학력인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도 전체 응답자 중 절반정도인 64명(48.49%)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일반경비원에 비해 어느 정도는 특수경비원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근무기간

우리나라의 특수경비업은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고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입장에서 경찰의 역할에 한계를 가지면서 특수경비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3> 근무기간

구 분	빈도수	비율(%)
1년 미만	98	74.2
1년 ~ 2년 미만	25	19.0
2년 ~ 3년 미만	4	3.0
3년 이상	5	3.8
계	132	100.0

<표 3-3>에서 보는바와 같이 경비업에 종사한 기간을 살펴보면 6~12개월 미만이 (50.7%)로 가장 많았고, 6개월 미만이 (23.5%), 12~24개월 미만이 (19.0%), 24개월 이상이 (6.8%)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근무기간이 짧게 나타난 것은 그 동안 국가 중요시설 경비를 청원경찰이 맡아오다 2001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특수경비원제도가 도입되어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라. 근무시간

<표 3-4> 근무시간

구 분	빈도수	비율(%)
8시간	3	2.3
8 ~ 10시간미만	39	29.5
10 ~ 12시간미만	61	46.2
12시간 이상	29	22.0
계	132	100.0

특수경비원들의 1일 평균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이다. <표 3-4>에서 보는바와 같이 특수경비원의 다수가 10~12시간 정도(44.0%)를 근무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8~10시간 미만(29.5%), 12시간 이상이(2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근무시간의 열악성과 야간근무로 인하여 생체리듬의 부조화로 단기이직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마. 월 평균보수 및 희망보수

<표 3-5> 월 평균보수

구 분	빈도수	비율(%)
79만원 미만	9	6.8
80~99만원	26	19.7
100~119만원	26	19.7
120만원 이상	71	53.8
계	132	100.0

<표 3-5>는 특수경비원의 월평균 보수를 조사한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특수경비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월 평균 80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자가(6.8%), 80~99만원 미만(19.7%), 100~119만원 미만(19.7%), 120만원 이상이(53.8%)로 각각 나타났다. 현재 특수경비원들이 받고있는 월평균 보수는 각종 공제금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신체적인 피로가 많고 야간근무의 열악성을 감안하면 보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특수경비원이 희망하고 있는 적정 보수액에 대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표 3-6> 월 희망보수

구 분	빈도수	비율(%)
100만원 미만	1	0.8
100~120만원 미만	8	6.1
120~150만원 미만	27	20.5
150~170만원 미만	47	35.6
170만원이상	49	37.1
계	132	100.0

그 결과는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수의 응답자들이 150만원 이상(72.7%)의 보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실제 특수 경비원이 받고 있는 보수와는 많은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특수경비원이 전문직종으로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수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바. 무술자격증(단증) 소유자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대원들의 대부분이 무술유단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임무수행시 자신을 방어하고 거동수상자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무술자격증이 필요하다.

<표 3-7> 무술자격증(단증) 소유자

구 분	빈도수	비율(%)
유 도	13	9.8
태 권 도	74	56.1
검 도	8	6.1
합 기 도	14	10.6
기 타	16	12.1
계	132	100.0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수경비원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무술자격증은 태권도(56.1%), 합기도(19.6%), 유도(9.8%), 검도(6.1%), 기타(12.1%)로 나타났으며, 여기서 기타자격증은, 택견, 쿵후, 킥복싱 등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신입교육시 체포 및 호신술 과목은 각 무도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종목별로 팀을 세분화하여 훈련을 실시하여야 교육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사. 신분형태(현재)

<표 3-8> 신분형태(현재)

구 분	빈도수	비율(%)
정 규 직	35	26.5
별 정 직	4	3.0
계 약 직	61	46.2
위탁(파견)직	13	9.8
파트타임	2	1.5
기 타	17	12.9
계	132	100.0

특수경비원의 신분형태는 <표 3-8>에서 보는바와 같이 계약직이 (46.2%), 정규직이 (26.5%), 위탁(파견직)이 (9.8%), 별정직이 (3.0%), 기타가 (12.9%)로 응답하여 신분이 불안한 계약직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특수경비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직급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가 되어 있지 않으며 단순히 대원, 조장, 반장, 팀장, 대장으로 직책이 단순화되어 있어 근무기간이 오래되어도 승진의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근무 년수에 따른 진급에 대한 기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 교육실시형태

<표 3-9> 교육실시형태

구 분	빈도수	비율(%)
출 퇴 근	11	8.3
부분합숙과 출퇴근	20	20.4
완전합숙	99	69.8
기타	2	1.5
계	132	100.0

교육훈련실시 형태에서는 <표 3-9>에서 보는바와 같이 숙식을 함께 하면서 합숙을 희망하는 사람이(69.8%), 부분합숙과 출퇴근이(20.4%), 기존 방식인 출퇴근이(8.3%)로 응답하여 피교육자가 희망하는 교육훈련 형태변화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합숙을 하면서 특수경비원으로서 강도 높은 훈련을 이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편으로는 합숙에서 얻을 수 있는 규율과 질서 및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하고 정보교류를 통한 특수경비원에 대한 자긍심을 갖기 위하여 합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조사결과 분석 및 논의

1.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의 환경

가. 교육훈련 시설

교육훈련에 있어서 양호한 교육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장소의 시설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교육훈련을 받는 특수경비원의 교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표 4-1> 교육훈련 시설에 대한 반응

구 분	빈도수	비율(%)
매우 만족	7	5.3
만족	39	29.5
보통	57	43.2
불만족	3	17.4
매우 불만족	6	4.6
계	132	100.0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시설에 대해 특수경비원들은 대체적으로 보통(43.2%)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어 선진국과 비견할만한 교육훈련장소의 시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교육훈련 장소

교육훈련에 있어서 장소는 피교육자의 교육훈련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로 교육장소의 선택이 교육훈련 성과와 직결될 수 있다.

<표 4-2> 교육훈련 장소에 대한 반응

구 분	빈도수	비율(%)
매우 만족	9	6.8
만족	18	13.6
보통	57	43.2
불만족	43	32.6
매우 불만족	5	3.8
계	132	100.0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들은 대체로 교육훈련하는 장소에 대해 보통(43.2%)이라고 응답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32.6%)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 내용을 분석해보면 현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장소가 특수경비원을 교육시키기엔 미흡하므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다 양호한 교육훈련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 교육훈련 주변여건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주변여건이 교육성과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장소의 주변여건이 매우 나쁘고 피교육훈련자가 집중하지 못한다면 교육훈련의 성과는 저조할 것이다.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주변여건에 대해 보통(48.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26.5%)라고 응답하였다.

교육훈련에서 주변여건에 따라 교육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현재 대학의 시설과 장소, 주변 여건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소기의 교육훈련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표 4-3> 교육훈련 주변여건에 대한 반응

구 분	빈도수	비율(%)
매우	5	3.8
만족	19	14.4
보통	64	48.5
불만족	35	26.5
매우 불만족	9	6.8
계	132	100.0

2. 특수경비원 교육훈련 내용

가. 특수경비원이 이수하는 교육훈련 내용

다음의 <표 4-4>는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의 내용에 대해 실제로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표 4-4>에서 보는바와 같이 체포 및 호신술(70.5%), 경비업법(66.8%), 시설경비(65.9%), 민간경비론(61.4%), 예절(59.1%), 보안업무(59.1%), 소방(56.9%), 기계경비 실무(55.3%), 정보보호(53.1%), 정신교육(50.8%)등의 교육훈련 내용에 대해 특수경비원이 생각하는 반응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교육훈련 내용이 효과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그 밖의 교육훈련의 내용에 대해서는 총검술(23.5%), 총기관리 행정(35.6%), 헌법 및 형사법(41.6%) 등은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훈련 내용에 관한 연구 검토시 이러한 특수경비원들의 설문내용을 참고하여 보다 높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표 4-4> 특수 경비원이 이수하는 교육훈련내용

구 분	매우 도움	도움	보통	도움안됨	전혀도움안됨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경비업법 (청원 경찰법 포함)	22 (16.7)	67 (50.8)	35 (26.5)	8 (6.1)	0 (0.0)
정신교육	14 (10.6)	53 (40.2)	46 (34.8)	16 (12.1)	3 (2.3)
헌법 및 형사법 (인권, 경비범죄 포함)	8 (6.1)	47 (35.6)	59 (44.7)	17 (12.9)	1 (0.8)
민간경비론	19 (14.4)	62 (47.0)	43 (32.6)	8 (6.1)	0 (0.0)
시설경비(야간경비포함)	24 (18.2)	63 (47.7)	38 (28.8)	7 (5.3)	0 (0.0)
소방학	20 (15.2)	55 (41.7)	51 (38.6)	6 (4.5)	0 (0.0)
정보보호	10 (7.6)	60 (45.5)	56 (42.4)	6 (4.5)	0 (0.0)
보안업무	15 (11.4)	63 (47.7)	50 (37.9)	3 (2.3)	1 (0.8)
예 절	23 (17.4)	55 (41.7)	40 (30.3)	9 (6.8)	5 (3.8)
민방공(화생방포함)	13 (9.8)	45 (34.1)	64 (48.5)	9 (6.8)	3 (0.8)
경찰관 직무집행법 (불신검문포함)	9 (6.8)	53 (40.2)	49 (37.1)	17 (12.9)	4 (3.0)
기계경비 실무	25 (18.9)	48 (36.4)	46 (34.8)	10 (7.6)	3 (2.3)
사격이론 및 총기조작	17 (12.9)	37 (28.0)	45 (34.1)	20 (15.2)	13 (9.8)
사격 및 안전교육	23 (17.4)	39 (29.5)	39 (29.5)	23 (17.4)	8 (6.1)
체포술 및 호신술	38 (28.8)	55 (41.7)	33 (25.0)	3 (2.3)	3 (2.3)
총검술	7 (5.3)	24 (18.2)	51 (38.6)	23 (17.4)	27 (20.5)
총기관리 행정	13 (9.8)	34 (25.8)	55 (41.7)	16 (12.1)	14 (10.6)

나. 직무수행에 있어서 선호하는 교육훈련내용

<표 4-5>에서 보는바와 같이 특수경비원들이 현장에서 직무수행시 가장 선호하는 교육 훈련내용은 정신교육 24.2%, 체포 및 호신술 12.1% 과목으로 반응하였다. 그리고 기계경비

실무 9.8% 경비업법, 정보보호 및 보안, 사격 및 총기조작 각 9.1% 민방공, 총검술 8.3%로 응답하였으며 화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소방학과 국가중요 시설을 경비하는 시설 경비 특수경비원이 소지할 수 있는 총기관리행정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4-5> 직무수행에 있어서 선호하는 교육훈련내용

구 분	빈도수	비율(%)
정신교육	32	24.2
체포 및 호신술	16	12.1
각계경비실무	13	9.8
경비업법	12	9.1
정보보호 및 보안	13	9.8
사격 및 총기조작	12	9.1
민방공	11	8.3
총검술	11	8.3
소방학	8	6.1
시설경비	3	2.3
총기관리 행정	1	1.0
계	132	100.0

3. 교육훈련의 과정

가. 교육자(교수)에 대한 평가

(1) 교육자(교수)의 강의 능력

<표 4-6> 교육자(교수)의 강의 능력에 대한 반응

구 분	빈도수	비율(%)
매우만족	16	12.1
만족	74	56.1
보통	38	28.8
불만족	4	3.0
매우불만족	0	0.0
계	132	100.0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 훈련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자(교수)의 강의능력은 교육훈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수선발 및 외래 강사초빙에 있어서 신중해야만 교육 훈련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응답자의 대부분 68.2%가 강의능력에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교육자(교수)에 대한 강의 능력은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약 30% 미만이 보통이하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미비점을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2) 교육자의 강의 내용

<표 4-7> 교육자(교수)의 강의 내용에 대한 반응

구 분	빈도수	비율(%)
매우만족	9	6.8
만족	71	53.8
보통	47	35.6
불만족	3	2.3
매우불만족	2	1.5
계	132	100.0

특수경비원 교육훈련 내용을 교육자가 충분히 피교육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가를 조사한 결과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반수가 만족 (53.8%)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교육자의 강의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 특수경비의 전문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사용자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자(교수)의 선발, 특히 외래강사의 선정에 있어서 신중한 고려를 해야만 강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자의 경험정도

<표 4-8> 교육자의 경험정도에 대한 반응

구 분	빈도수	비율(%)
매우만족	20	15.2
만족	38	28.8
보통	68	51.5
불만족	4	3.0
매우불만족	2	1.5
계	132	100.0

교육훈련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자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교육자(교수)의 자격기준이 확일적일 수는 없지만 전문 영역의 지식과 기술 그리고 피교육자를 가르치는데 적합한 인품과 덕성 및 의욕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표 4-8>에서보는 바와 같이 과반수가 보통 (51.5%)이하로 응답하여 실무경험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급적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우수한 교육자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계, 경비업체 종사자, 연구소에 근무하는 유능한 인력에 대한 인재풀을 구성하여 과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이에 따른 연구비지급 및 강사료를 현실화 시켜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나. 교육훈련의 과정에 대한 평가

(1) 교육시간의 구성

<표 4-9> 교육시간의 구성에 대한 반응

구 분	빈도수	비율(%)
매우만족	3	2.3
만족	26	19.7
보통	64	48.5
불만족	29	22.0
매우불만족	10	7.6
계	132	100.0

교육시간의 구성에 대한 응답은 <표 4-9>에서 보는바와 같이 보통(48.5%), 불만족(22.0%)로 나타나 교육훈련 시간의 구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나타난 교육훈련시간의 문제점은 특수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시간 조정과 과목의 삭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체포, 호신술과 같은 무도과목은 하루종일 시간을 편성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하므로써 피로누적으로 인한 익일 교육훈련에 지장을 초래하여 피교육자의 불만이 제기 되고있다.

이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이 아니라 교육자(교수)의 편의를 위해 시간을 나누어 편성하지 않고 하루에 모아서 체력 훈련을 하다보니 이러한 불만사항이 나타나고 있다.

(2) 강의매체의 활용

<표 4-10> 강의매체의 활용에 대한 반응

구 분	빈도수	비율(%)
매우만족	1	0.8
만족	27	20.5
보통	68	51.5
불만족	29	22.0
매우불만족	7	5.3
계	132	100.0

교육 훈련에서 교육매체의 활용은 학습동기유발과 교육훈련 성과에 많은 영향을 끼칠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표 4-10>에서 보는바와 같이 교육매체의 활용정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51.5%)로 나타나 현재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에 있어서 교육매체의 활용이 원활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매체활용으로 인한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강의매체 활용을 높이고 교육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용교육장을 마련하여 좋은 시설에서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하루바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강의교재의 내용

<표 4-11> 강의교재의 내용에 대한 반응

구 분	빈도수	비율(%)
매우만족	4	3.0
만족	42	31.8
보통	63	47.7
불만족	17	12.9
매우불만족	6	4.5
계	132	100.0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실시 기관에서 제공하는 강의교재의 내용은 교육훈련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들이 교육훈련을 이수하는데 다양하게 활용되므로 강의교재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교육훈련의 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수료 후 현장에 근무하면서 참고자료로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그러나 <표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통(47.7%), 만족(31.8%)로 과반수이상 강의교재 내용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특히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을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므로 교육자(교수)가 상이하므로 강의교재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수경비원 교육훈련 실시 주체인 경찰청에서 강의교재 연구를 전담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비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재 내용의 수정과 보완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 교육훈련 시간에 대한 평가

(1) 신입교육훈련 시간

<표 4-12> 신입 교육 훈련 시간에 대한 반응

구 분	빈도수	비율(%)
매우만족	6	4.5
만족	21	15.9
보통	53	40.2
불만족	36	27.3
매우불만족	16	12.1
계	132	100.0

현재 경비업법에 규정된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시간은 80시간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시간은 업무의 특성과약과 직무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지식을 습득하는 최소한의 기간이라 생각된다.

<표 4-12>에서 보는바와 같이 신입교육훈련 시간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 보통(40.2%), 불만족(27.3%)로 나타나 교육훈련시간에 대해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현재 교육훈련시간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교육훈련시간의 조정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 직무 교육 훈련시간에 대한 반응

<표 4-13> 직무 교육 훈련에 대한 반응

구 분	빈도수	비율(%)
매우만족	2	1.5
만족	32	24.2
보통	69	52.3
불만족	21	15.9
매우불만족	8	6.1
계	132	100.0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훈련시간은 매월 6시간으로 실시하게 되어있으나 <표 4-13>에 보는 바와 같이 보통이(52.3%)로 불만족(15.9%), 매우 불만족(6.1%)를 합치면 75%이상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직무교육훈련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형식적이고 행정적인 절차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차제에는 불만요인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직무교육에 대한 감독관 층의 지도 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 교육훈련 방법에 대한 평가

교육훈련을 시키는 교육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어떠한 교육훈련의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성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표 4-14>에서 보는바와 같이 강의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강의 및 강연이 (62.1%), 현장견학(43.9%), 시청각교육(41.7%), 토론 및 토의(36.4%)로 나타났으며 매우만족을 합하면 실습 및 실기가 (71.2%)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론 및 토의는 보통이하가 (56.8%)로 나타나 특수경비원들의 교육훈련 방법에서 토론 및 토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4> 교육훈련 방법에 대한 반응

구 분	매우만족	만 족	보 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강의 및 강연	12 (9.1%)	82 (62.1%)	32 (24.2%)	4 (3.0%)	2 (1.5%)
토론 및 토의	9 (6.8%)	48 (36.4%)	61 (46.2%)	8 (6.1%)	6 (4.5%)
시청각 교육	12 (9.1%)	55 (41.7%)	59 (44.7%)	4 (3.0%)	2 (1.5%)
현장견학	29 (22.0%)	58 (43.9%)	33 (25.0%)	8 (6.1%)	4 (3.0%)
실습 및 실기	30 (22.7%)	64 (48.5%)	33 (25.0%)	4 (3.0%)	1 (0.8%)

라. 교육훈련의 평가 및 상벌에 대한 평가

<표 4-15> 교육훈련의 평가 및 상벌에 대한 평가에 대한 반응

구 분	빈도수	비율(%)
매우만족	0	0.0
만족	22	16.7
보통	53	40.2
불만족	33	25.0
매우불만족	24	18.2
계	132	100.0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이 보다 충실히 이행되어 직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교육기간동안 학습한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상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표 4-15>에서 보는바와 같이 응답자 중 보통 이하가(78.0%)로 상벌에 많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객관적인 기준없이 상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자체에 해당교육기관에서는 이러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실시 결과를 인사 고과에 반영하여 사기 진작 및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훈련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비

가. 교육전문기관

(1) 교육전문기관의 필요성

<표 4-16> 전문교육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반응

구 분	빈도수	비율(%)
꼭 필요하다	61	46.2
필요하다	60	45.5
그저 그렇다	9	6.8
필요 없다	2	1.5
계	132	100.0

<표4-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교육훈련을 잘 시켜 현장에서 근무시 사용자에게 완벽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그러나 현재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기관이 대학교 사회교육원과 에스원 연수원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피교육자의 반응을 분석해 보면 전문교육기관이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91.7%)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문교육기관은 특수경비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수립과, 교육, 연구, 사후평가 등 경비업무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종합적인 교육훈련 기관으로 경비전문학교 설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2) 교육전문설치기관의 기관

<표 4-17> 교육전문 설치기관에 대한 반응

구 분	빈도수	비율(%)
경비전문학교	74	56.1
경비업체교육기관	25	18.9
경찰교육기관	19	14.4
대학부설교육기관	10	7.6
기 타	4	3.0
계	132	100.0

<표4-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전문기관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경비전문학교가 (56.1%), 경비업체교육기관(18.9%), 경찰교육기관(14.4%), 대학부설 교육기관(7.6%)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2개 대학의 부설 교육기관과 전문경비업체 연수원으로 접합하지 못한 것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나. 교육훈련비

(1) 교육훈련비 부담 주체

<표4-18> 교육훈련비 부담 주체에 대한 반응

구 분	빈도수	비율(%)
본 인	5	3.8
경비업자(회사에서 지급)	104	78.8
본인 + 경비업자(공동)	21	15.9
기 타	2	1.5
계	132	100.0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을 채용한 때에는 경비업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비원에게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경찰교육기관이나 행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개설한 특수 경비원 신입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표4-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비업자 부담이 (78.8%) 본인과 경비업자 공동부담이(15.9%), 본인부담이(3.8%)로 규정을 위반하는 특수경비업자가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훈련기간동안은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일정기간 교육훈련비를 공제하는 편법을 쓰는 경비업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감독기관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교육훈련비의 적정성에 대한 반응

<표 4-19> 교육훈련의 적정성에 대한 반응

구 분	빈도수	비율(%)
매우 비싸다	14	10.6
비싸다	55	41.7
보통이다	58	43.9
저렴하다	5	3.8
매우 저렴하다	0	0.0
계	132	100.0

신입 특수경비원이 이수하는 교육훈련시간이 80시간으로 적정한 교육훈련비의 산출이

필요하다. <표 4-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통이 (43.9%), 비싸다(41.7%), 매우 비싸다 (10.6%) 저렴하다(3.8%)로 나타나 교육훈련비가 대체적으로 비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차제에 적절한 교육훈련비의 원가를 산출하여 특수경비업자나 특수경비원들이 부담없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훈련비가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이상과 같이 본 논문은 특수경비원의 신입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통한 발전방안을 알아보았다.

본 논문의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의 환경개선

교육훈련 시설과 장소 및 주변 여건은 교육훈련 성과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설문에서 나타났듯이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응답하여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전문 교육훈련기관이 조속한 시일내에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특수경비원 교육훈련 내용개선 및 보완

특수경비원이 직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의 교육훈련내용은 효과적이라는 반응을 하고 있으나, 총검술, 총기관리행정, 헌법 및 형사법 등은 직무수행시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훈련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경비원 교육훈련과정 개선

교육자, 강의내용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으나 교육자의 경험정도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훈련 시간의 구성, 강의매체 활용, 강의교재 내용에 대해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보완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특수경비원 교육훈련 시간의 조정

신입직무 교육훈련 시간에 대해 피교육자의 약60% 이상이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교육훈련 시간의 재조정과 직무교육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도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특수경비원 교육훈련 평가 및 상벌의 공정성 유지

피교육자의 약 80%가 평가 및 상벌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해당교육 기관의 공정한 평가 및 상벌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교과평정시 엄격하게 신상필벌을 적용하여 근무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특수경비원 전문교육기관의 설립

특수경비원은 국가 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전문 요원으로 양성하여야 하나 교육훈련 환경 및 시설, 프로그램의 미흡으로 현재 대학시설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므로 전문성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또는 경비협회가 경비 전문 학교를 설립하여 총괄적인 민간경비에 대한 교육훈련시스템을 갖추어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특수경비원 교육훈련 실시형태 개선

현재 교육훈련실시형태는 완전 출퇴근으로 80시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피교육자의 설문에 의하면 약 75%이상이 합숙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훈련실시 방법과 형태를 개선하여야만 소기의 교육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근무대상분야 별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신입교육 80시간중 공통적인 과목은 전체 함께 실시하고 실습 및 실기 현장견학은 국가 중요시설의 대상과 종류에 따라 학급 또는 조를 편성하여 특화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훈련에 대한 성과와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특수경비원교육훈련 사용자, 경비업자, 특수경비원,학자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과 교육환경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실태를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조사대상자가 132명으로 한정된 표본이므로 폭넓은 연구의 제한성을 극복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서는 더 많은 표집과 전국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특수경비업무의 영역은 부여된 특성상 매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안전서비스

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의 조화가 필요 하리라 생각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특수경비제도가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잘 교육 훈련된 전문인력화로 새로운 수요창출과 동시에 국가중요시설을 담당하는 특수경비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경찰대학.(1995). 「경찰학개론」.경기: 경찰대학편집부.
- 김두현.(2001). 「민간경비론」.서울: 엑스퍼트.
- 박연호.(1982). 「인사행정론」.서울: 법문사.
- 안해균.(1984). 「현대행정학」. 서울: 다산출판사.
- 유종해.(199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이균근.(2002). 「민간경비론」. 서울: 백산출판사.
- 이상안.(1999). 「현대경찰행적학」. 서울: 형설출판사.
- 강길훈.(1999). 「한국의 민간경비 교육훈련체제」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1999). ‘한국민간경비의 환경과 이론적 배경’ 고찰. 「한국민간경호경비학회」 제 2호
- _____.(1999). ‘한국민간경비·경호의 교육훈련 발전 방안’ 고찰. 「용인대인문사회연구소」 제3호
- _____.(2000). ‘경비원의 특성이 교육훈련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 경비학회」 제13호
- _____. ‘경비지도사의 교육훈련체제에 대한 경비업자의 의식’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 행정학회」 제10호
- 김순열.(2001). ‘민간경비업체의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제11호.
- 박병식.(2001). ‘특수경비원 제도’에 관한 고찰 : 총기휴대사용을 중심으로, 수사연구. 제 19권 4호.1
- _____.(2000). ‘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원제도’의 도입 방안 연구. 「용인대인문사회논총」 제6집
- 안창훈.(2000). 「시설경비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 국가 중요시설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원.(1999). ‘중요시설경비상에서 Y2K’의 실태와 대처방안.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_____.(2002). '경비지도사의 교육훈련' 만족도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제5호
- 이윤근.(2001). '특수경비원의 총기소지' 에 관한 연구. 「Security World 51」
- _____.(2001). '한국민간경비산업의 경쟁력제고'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3호
- _____.(1999). '사회안전확보를 위한 전문자격증제도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에 관한 연구. 동국대행정대학원 행정논집.
- 이윤근외(1998). '국가중요시설의 효율화 방안' 에 관한 연구. 「치안 연구소 연구보고서」 98-08
- 경찰백서.(2002). 경찰청.
- 범죄백서.(2002). 법무연수원
- 경비업법 전문개정 국회보(1999). 414호, 2001행정자치위원회 현안보고,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 <http://www.nis.go.kr>
- <http://www.police.go.kr>
- <http://www.npa.go.kr>
- <http://www.S1.samsung.co.kr>
- <http://www.chosun.com.2001.3.8>
- <http://www.KASN.or.k>
- <http://www.Joeun.com>

[외국문헌]

- John L. Sullivan,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New York : Me Graw Hill Book, Co, 1977
- Clifford E, Simonsen. "Private security in America : An Introduction", PHUSR, 1998
- Robert J. Fischer/Gion, "Introduction to Security", Butterworth Heinemann, 1998
- 防犯防災新聞 1992. 5. 1
- (社)全國警備業協會, 10월호, 2002

ABSTRACT

The Study about Problem in the course of Education of Special Guard

by. Kang, Gil Hoon

The first, Improvement of education training condition

Education training is influenced by facilities, environment around. according to questionnaire, it is very poor, we should set up a training institute as soon as possible.

The second, Improvement of education training contents

In working as special guard, they do not feel the need of curriculums like bayonet fencing, criminal law, and so on. accordingly we should adjust the contents of education training.

The third, Improvement of education training course

People were satisfied with the contents of lectures and educator more than half to some degree, but there was a question of time, communication, contents. we should try to remedy things like this.

The fourth, Adjustment of education training time

The 60% people of all were not satisfied with the time of education training about new duty. we need to intensify and oversee a duty training and the restructure of training time.

The fifth, Fairness of valuation, reward and punishment in education training

The 80% people of all had the bad feeling against reward and punishment, so we tried to let fairness of valuation, reward and punishment completed by educational institution.

The sixth,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ion for special guard

special guard have to be raised by special institution, but lacking of educational program, educational facility, educational Environment, university took the place of government as institution in raising special guard, education still leave much to be desired. so to develop the industry of a civil security, government or a guard association will set up the school of training, education, system about civil security as a whole.

The seventh, Improvement of education training form

People have to be taught for 80 hours in education training. according to questionnaire,

over 75%people wanted to lodge at education accommodation, so in doing education training, we need to improve a system and form.

The eighth, Operation of education training suitable for a characteristic in jobs

In the education of 80 hours, common courses will need to be carried out together, depending on class, the object of national facility, inspection and practice will need to be done. maybe this can be the improvement of growing up education training.

In the result of the study, we need to build up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 training through a lot of opinion like program, system, circumstances.

Keep in mind that the paper was a few of problems because of the limit of the survey of 132 peoples. accordingly we try to collect a survey related with this around country.

especially this will need to be asked for harmony between the law and the background of system. in the future, to develop the special guard service, increase the demand of this service, have to raised the expert and the special guard service has to enlarge.